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221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7. 5. 10.자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소외 D에게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7. 5. 11. 접수 제555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D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7. 5. 10.자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소외 D에게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7. 5. 11. 접수 제5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D는 2005. 9. 8. 주식회사 E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2) D는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을 연체하였는데, 주식회사 E는 2017. 9. 8. F 주식회사에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2.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3) F 주식회사는 2018. 2. 21. 원고에 위 신용카드 관련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13.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4)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28797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2. “D는 원고에게 7,812,702원과 그 중 6,364,052원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와 같은 원고와 D의 채권·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권’ 내지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의 법률행위

- 1) D는 2006.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피고 B는 D의 모이고, 피고 C는 D의 동생이다.
- 3) D는 2017. 5. 1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5550호로 2017.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4) D는 2017. 5. 1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5551호로 2017.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채무자 D의 재산상태

D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D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G캐피탈에 대한 25,742,000원 상당의 채무, H카드에 대한 2,428,000원 상당의 채무, I카드에 대한 1,832,000원 상당의 채무, J캐피탈에 대한 1,648,000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기관장,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인정 및 사해의사의 추정 등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채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증여한 행위(위 증여를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은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금양임야, 묘토, 종가 등에 해당하는데, 기존 제사주재권자인 D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생인 피고 C가 제사주재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민법 제1008조의3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도 실질적으로 승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D 역시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도 선의였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 제4, 10, 11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민법 제1008조의3에서의 금양임야, 묘토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성, D의 사해의사’를 부정하거나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 및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D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성

별지

부동산 목록

1. 강원도 양양군 전 367㎡
2. 강원도 양양군 전 314㎡
3. 강원도 양양군 대 565㎡
4. 강원도 양양군 임야 42347㎡ 끝.